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제정 2017. 9.29 조례 제1691호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 ·내실화함으로써 용인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·발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.
 - 1.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
 - 2.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· 물적 · 제도적 토대의 구축
 - 3. 국제통상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
 - 4. 외국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한류(韓流) 국제 문화・관광 도시 구현
 - 5. 용인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통한 국제 문화 시민 육성
 - 6.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 발도상국(이하 "개발도상국"이라 한다)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 관계 증진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국제화 촉진"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, 물자, 정보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, 국제사회에서 용인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려는 능동적·적극적 노력을 말한다.
 - 2. "국제교류협력"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.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자원·물적자원은 물론 문화·제도·

정책과 각종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.

- 3. "공적개발원조"란 시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.
- 4. "국제통상"이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.
- 5. "외국도시"란 우리나라의 시·도, 시·군·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 시를 말한다.
- 6. "자매도시"란 시와 행정·사회·경제·문화·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교 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.
- 7. "자매결연"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우호교류도시"란 시와 행정·사회·경제·문화·체육 등 분야에서 국 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우호협약을 체결한 외국도시로서 자매결연을 체 결하지 아니한 외국도시를 말한다.
- 9. "우호협약"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- 10. "해외연락관"이란 시와 국제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- 11. "국제명예자문관"이란 시와 국제교류협력 관계에 있거나 국제교류협력이 예정된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강화와 관련된 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사람을 말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 관할구역 소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, 국제화 촉진,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개발원조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, 경제, 교육, 문화, 체육, 환경, 보건 및 홍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
제2장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추진

- 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, 국제교류협력,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(이하 "중장기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제화 촉진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촉진 전략
 - 3.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전략
 - 4. 민간 부문의 각 분야별 국제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
 - 5.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
 - 6.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
 - 7.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및 국제기구 가입 추진 방안
 - 8.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
 - 9. 그 밖에 국제화 촉진, 국제교류협력,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
- 제6조(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한 사업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, 공적개발원 조 및 국제통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의 주관·지원 및 참가
 - 2.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관내 기업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 한 교육,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

- 3. 해외 봉사 또는 경제·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·복지·홍보 및 공적개 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주관·지원 및 참가
- 4. 외국도시와의 교류 및 실리 추구를 위한 인적자원의 상호파견
- 5. 시 관할구역 소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, 해외규격 인증획득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
- 6. 자매도시·우호교류도시 상호간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·홍보관 및 거리 조성 등의 사업
- 7. 자매도시를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

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8. 국제회의·포상관광·컨벤션·전시(MICE), 국제통상, 관광 및 방송영 상 산업 활성화 사업
- 9. 그 밖에 국제화 촉진, 국제교류협력,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)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, 국제회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
- 제8조(국제기구 및 국제경기대회 등 유치)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을 도모 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구, 국제경기대회, 국제 회의 및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국제기구, 국제경기대회,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,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전에 유치 가능성, 투자 비용,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재해구호 지원) 시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

지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에 지진, 태풍, 해일, 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의료지원 인력 등으로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0조(국가별 전문 인력 육성)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 원 중에서 국가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포상) 시장은 국제교류협력,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내국인·외국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.

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

- 제12조(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약(이하 "자매결연등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이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
 - 2. 호혜(互惠)와 상호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 것
 - 3.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
 - 4. 시와 지역여건 등이 대등할 것
 - ③ 시장은 재정 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전검토)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외국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도시 규모, 지역여건 및 교류의 적정성 등 교류여건을 시와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교류여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해당 외국도시의 주민, 지방의회 의원, 학계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

표 등을 초청하거나 현지답사 등을 실시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.

- 제14조(자매결연등 체결) ① 자매결연등은 시장과 해당 외국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, 양 도시의 공통 관심사항 및 향후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적은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 또는 해당 외국도시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, 추후에 체결식을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자매결연등은 시장과 해당 외국도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서명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 - ③ 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 간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 부담에 관하여는 시장과 해당 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15조(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)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인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 추진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 등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) 시장은 자매결연등의 교류가 시의 국 제화 촉진 및 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 도록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장 용인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

- 제18조(설치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매도시, 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에 용인시 해외사무소(이하 "해외사무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

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9조(기능)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사회·경제·문화·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
- 2. 외국의 무역 · 국제통상 · 산업기술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3. 시의 공산품·농축수산물 전시, 홍보 및 수출상담 등 지원
- 4. 시정(市政)의 대외적 홍보
- 5.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
- 제20조(설치 및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출자·출연기관, 현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 -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소속 공무원의 파견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면 소속 공무원을 해외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장 용인시 해외연락관 및 국제명예자문관 위촉 · 운영

- 제22조(연락관 및 자문관의 운영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해외연락관(이하 "연락관"이라 한다) 및 국제명예 자문관(이하 "자문관"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연락관은 자매도시, 우호교류도시 및 해외사무소 소재 외국도시(자매도 시 또는 우호교류도시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마다 3명 이내로 한다.
 - ③ 자문관의 총수는 30명 이내로 한다.
- 제23조(연락관 및 자문관의 업무) ① 연락관은 제1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다.

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-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1. 시의 대외 홍보 지원
- 2.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등 및 교류
- 3. 국제통상 학예 문화 예술 및 체육 교류 등
- 4. 민간 부문 국제교류 지원
- 5.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- 제24조(연락관과 자문관의 위촉) ① 연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용인 시정에 밝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
 - 2. 한국 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시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외국인
 - 3.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
 - ② 자문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국내외 국제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젠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.
 - ③ 연락관과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25조(위촉 해제) 시장은 연락관과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연락관 또는 자문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3. 품위손상 등 연락관 또는 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(자문관만 해당한다)
 - 5. 그 밖에 연락관 또는 자문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26조(품위유지) 연락관과 자문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- 제27조(경비지원 등) ① 연락관과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1. 국내외 출장 여비(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)
 - 2. 통신비용(우편요금, 국제전화요금 등)
 - 3. 통역비용
 - 4. 그 밖에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
 - ② 연락관과 자문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해외연락관(국제명예자문관) 경 비 청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1호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사전에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청구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명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연락관과 자문관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⑤ 연락관과 자문관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및 「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28조(자료제공) 연락관 및 자문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장은 관련 자료를 제때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29조(회의소집 등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락관과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의 의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된다.
 - ③ 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되, 의결하지 아니한다.
- 제30조(간사 및 서기) 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두되, 간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 - ②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
제6장 민간인 여비 등 지원

제31조(지원대상)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합의에 따른 정기적인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을 방문하는 문화예술 인력 또는 한식 조리사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2조(지원기준) 제31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.

제7장 보칙

제3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.

- 1.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조례
- 2. 용인시 관·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조례
- 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와 외국도시 간에 체결한 자매결 연 또는 우호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서식]

□ 담 당 업 무 :

해외연락관(국제명예자문관) 경비 청구서

| □ 추 진 기 간 :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|--|
| | | | (단위 : 원 | | |
| 구 분 | 청구금액 | 세부내역 | 비고 | | |
| 출장여비 | | | | | |
| 통신 비용 | | | | | |
| 통 역 비 용 | | | | | |
| 그 밖의 비용 | | | | | |

- * 국내외 여비에 대하여 사전 청구 후 지급받은 경우 출장여비 청구는 제외할 것
- ※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,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

| 활동성과 | : |
|------|---|
| | |

0

-

_

 \circ

년 월 일

청 구 인 : (서명 또는 인)

첨부 : 증명서류 부.

용 인 시 장 귀하